

Working Paper 2005-04

# 일본 자격검정의 위탁 관리·운영 사례

김덕기, 이동임, 김상진

2005.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일본 자격검정의 위탁 관리·운영 사례

김덕기<sup>1)</sup>, 이동임<sup>2)</sup>, 김상진<sup>3)</sup>

## < 목 차 >

I. 서론 .....	1
II. 일본의 기능검정제도 개요 .....	2
III. 일본 기능검정의 위탁 현황 .....	5
IV. 결론 .....	16
참고문헌 .....	18

정부는 산업현장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의 조급한 확대 시행은 자격의 현장성 확보 물론 기존 정부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검정운영의 장점인 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축적된 경험을 통한 자격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질 관리에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국가자격검정을 위탁 시행한 일본의 기능검정 위탁제도의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제시된 방안은 향후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제도의 시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 dkkim@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 dilee@krivet.re.kr)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 sjkim@krivet.re.kr)

## I. 서론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가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직업능력을 보여주는 자격의 기능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적자원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의 신호기능은 노동시장에서 미비하게 작동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는 자격검정에 있어 경쟁체제 없이 특정 기관의 독점적 다량의 자격검정 시행에 의한 자격의 현장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신명훈 외, 1997; 이동임·김덕기, 2001; 이병희 외, 2002).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자격의 수요자인 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주도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위탁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조정윤·김덕기, 2001 ; 이동임·김덕기, 2001; 이영현 외 2002). 또한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정진화·최영섭, 2003; 이영현 외, 2003).

이에 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에 걸 맞는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립하고자 검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을 전면 개정<sup>1)</sup>하였다. 특히,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산업현장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sup>2)</sup>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주요 위임·위탁 대상 기관으로 간주되는 각종 사업주 단체나 학회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위탁받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검정을 시행할 조직, 인력, 시설·장비 그리고 검정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등의 충분한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덕기·김상진, 2003).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의 조급한 확대 시행은 자격의 현장성 확보 물론 기존 정부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검정운영의 장점인 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축적된 경험을 통한 자격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질 관리에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자격 검정제도인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기능검정 위탁 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탁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2004. 2. 9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04. 12. 28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04. 12. 31 개정.
-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의 기준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Ⅱ. 일본의 기능검정제도 개요

### 1. 기능검정제도 연혁

일본의 기능검정은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검정하고, 이를 공증하는 제도로써 노동자의 기능과 지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기능검정은 노동자의 기능습득의욕의 증진과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재취업, 노동자의 사회적 평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검정의 합격자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라 '기능사' (예: 1급 건축목공기능사)라고 명칭을 부여받는다.

기능검정제도는 구 직업훈련법(1958년 법률 제133호)에 의거, 1960년에 최초로 5직종(8작업)<sup>1)</sup>이 실시되었다. 그 후, 1978년도에는 직업훈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2년도에는 조리 및 빌딩 클리닝의 2직종에 대하여 직업훈련법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대신이 미리 지정하는 사업주의 단체에 기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기능검정시험이 실시되었다(1999, 中央職業能力開發協會).

1985년도에는 직업생활에서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직업훈련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업능력개발촉진법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현장의 기술기능의 변화에 따라 기능검정직종을 정리 및 통합하는 것 외에 응시자격을 간소화를 하였다. 1988년도에는 1급의 상위 등급인 특급이 생겼으며 1993년에는 2급의 하위 등급인 3급, 기초1급 및 기초2급이 생겼다. 또한 2001년부터 기능검정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해 지정시험기관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2004년도 기준으로 137가지 직종, 7종류의 등급의 기능검정이 존재하며 노동자의 기능향상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69년도부터 기능검정제도가 실시된 때부터 2001년도까지의 누계를 살펴보면, 총 약 569만 명이 기능검정에 응시, 약 252만 명이 합격하여 기능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 2. 검정체제

기능검정직종의 평가기준 작성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지방 및 민간에서 순차적으로 기능검정업무를 이관해오고 있다. 2001년 지정시험기관 방식의 기능검정이 도입되면서 지정시험기관 자체에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시험의 실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종에 대하여 정부(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지방(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중앙 직업능력개발협회 및 행정구역 직업능

1) 기계공(보통선반작업), 나무리공(치공구나무리작업, 금형나무리작업, 기계조립작업), 판금공(건축판금작업, 공장판금작업), 건축대공(대공공사작업), 기계제도공(기계제도작업)

력개발협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정시험기관이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 3.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

기능검정은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책임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기능검정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험문제는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 작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책임자는 기능검정 응시신청서의 접수와 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협회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민간 시험기관에 기능검정의 시험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정시험기관제도가 있어, 조리, 청소대행업, FP(financial planning: 재무 설계), 금융창구 서비스, 레스토랑 서비스 및 유리용 필름 시공직종에 대해서는 지정시험기관이 기능검정의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운영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은 <표 1>, <표 2>와 같다.

후생노동대신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책임자가 실시하는 기능검정직종에 대하여, 기능검정시험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책임자에게, 시험문제 등의 작성은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게 위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책임자는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가운데 기능검정 응시신청의 접수와 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자치단체의 직업능력평가개발협회에게 맡기고 있다.

<표 1> 중앙(국가)의 역할

구분	중앙(국가)
기본 방침 수립	①기능검정직종 설정 ②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담당할 직종의 수수료 설정 ③작업설정(지방자치단체 방식) ④등급설정
자격의 인정	합격자 결정(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관리 (질 보증)	기능검정시험 관리 ①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의 합격자의 결정에 의한 공평한 시험의 실시 ②모든 직종에 '합격에 필요한 기능 및 이에 관한 지식의 정도'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요구되는 기술적 단계를 통일하여, 그 질의 보증을 확보 ③시험과목의 설정, 인정(지정시험기관)에 따라 기술적 단계 유지 ④보고규정 및 각종 정기적인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운영 확보
명칭 사용	기능사의 칭호부여(특급, 1급, 단일등급)

자료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 2> 지방 등의 역할

구분	지방(자치단체 책임자)	지정시험기관	산업부분(관계협회단체)
기본 방침 수립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실시하는 직종의 수수료 책정	작업의 설정(단, 후생노동 대신의 인정이 받아야 한다)	
자격의 인정	합격자 결정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관리 (질 보증)	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협회가 담당하는 응시자격·시험면제 자격 심사 등의 지도감독	지정시험기관에 속한 업무처(예: 각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응시신청서의 접수, 기능검정시험의 응시자격·시험면제 자격 심사 등의 지도감독	①중앙 기능검정위원, 전문조사원, 지정시험기관 기능검정위원 등 시험문제작성의 기술적 협력 ②시험장, 기자재 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제공
명칭 사용 (합격증서 교부)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담당하는 직종의 2급 이하의 합격증서 교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의 2급 이하의 합격증서 교부	

자료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능검정의 시험문제 작성 및 실기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관계단체의 협력형태로는 중앙차원에서 후생노동성의 기능검정 기준설정·개정을 위해 전문조사원회에 전문조사원(비상 근국가공무원,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추천·파견할 수 있고, 중앙 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는 기능검정의 실기시험 및 학과시험 작성을 위해 중앙 기능검정위원회에 중앙 기능검정위원(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위원,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추천·파견할 수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 기능검정 실기시험의 채점을 위해 자치단체 기능검정위원(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위원,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추천·파견할 수 있고, 실기시험이 있을 때에는 실기시험장과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기능검정 보좌원을 파견하고, 회원기업·종업원에게 기능검정의 응시를 장려함으로써 기능검정의 실시를 돕고 있다.

### Ⅲ. 일본 기능검정의 위탁 현황

#### 1. 실시배경

일본에서 기능검정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개혁과정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12월 1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행정개혁대강(行政改革大綱)”에서는 중앙정부 등의 개혁과 관련하여 “행정의 조직과 업무의 감량 및 효율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개혁 방안으로 국가행정조직의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독립행정법인화 등의 행정의 감량,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획입안과 집행의 분리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화를 추진하여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사업 이외는 외부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후생노동성도 2003년 5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직업능력평가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민간기관으로 기능검정의 시험업무 위탁 확대와 사무계 종목을 포함한 기능검정 종목의 확대와 재검토를 추진하게 되었다.

#### 2. 현황

2004년 9월 기준으로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기능검정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파이낸셜플래닝, 금융창구서비스, 레스토랑서비스, 빌딩설비관리, 정보배선시공, 유리용 필름시공, 조리, 빌딩클리닝 등의 8개 종목이다. 이 중 빌딩설비관리, 조리, 빌딩클리닝은 이전부터 후생노동성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종목으로 기존에 “준지정시험기관”으로서 위탁되어 오던 것을 “지정시험기관”으로 승격시켜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이다. 나머지 5개 종목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03. 5)에 따라 사무계 종목으로의 기능검정종목의 확대라는 취지하에 “지정시험기관”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새롭게 기능검정대상으로 선정된 종목이다.

그러나 이들 신규 기능검정 종목들도 새로 신설된 종목은 아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국가공인민간자격과 유사한 “기능심사” 인정시험으로 운영되어 오던 종목들을 “기능검정” 종목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 종목이 “기능검정”에 포함되게 된 배경은 “기능심사” 인정시험이 2002년 3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 노동후생성은 기존의 “기능심사”기관들에게 “기능검정”이나 “순수민간자격”으로 전환할 것을 선택하도록 한 데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능심사”기관은 후생노동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순수민간자격으로 전환하였지만 일부 기관은 민간시험보다는 권위면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검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기능검정”으로 전환을 희망하였더라도 후생노동성과의 사전 협의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기능검정”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이다.

또한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기능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 파이낸셜플래닝 종목은 (사)금융재정사정연구회와 일본 파이낸셜플래너즈협회에 각각 위탁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종목은 같지만 검정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기관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능검정 종목은 분야에 관계없이 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당해 기관으로부터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능검정 종목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으로의 위탁을 확대 해 갈 예정이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의 위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기능검정 민간 위탁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일본의 기능검정 민간 위임위탁 현황

구 분	내 용
위탁 배경	○ 행정개혁으로 인한 행정조직과 사무의 감량 및 효율화 차원
시행 시기	○ 2003년 5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
위탁 내용	○ 기능검정 지정시험기관제도 운영
위탁 규모	○ 2004년 9월 현재 8개 종목의 지정시험기관 운영 - 3개 종목 : 준지정시험기관에서 지정시험기관으로 승격 - 5개 종목 : ‘기능심사’ 종목을 ‘기능검정’ 종목으로 전환
위탁 제한	○ 종목 제한 없음
위탁 범위 (역할 분담)	○ 국가 : 검정종목과 등급의 설정, 합격 여부 결정 ○ 시험기관 : 시험과목 설정, 시험 실시 등 기타 시험관리 전반
위탁 대상	○ 사업주단체, 민법상 법인, 법인인 노동조합, 비영리 법인
위탁 기준	○ 직원, 설비, 시험업무의 실시방법 등의 시험실시계획이 적절할 것 ○ 시험업무 실시에 적절한 재정적·기술적 기초를 갖추고 있을 것
신청 접수 및 심사기관	○ 후생노동성 능력평가과
지정신청 및 심사절차	○ 종목별로 대표기관 1곳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이 시험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심사
위탁 취소	○ 부정 지정, 시험업무규정 위반, 임원 및 기능검정위원의 부정 등
재정지원	○ 검정수수료 우대 : 적정수준의 검정수수료 인상 인정 ○ 재정지원 : 기존 시험기관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지원
사후관리	○ 취득자 현황 보고,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제출, 검정위원 선임 신고 등

### 3. 위탁의 범위

일본에서 기능검정의 민간 위탁시 검정종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기능검정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인 검정종목과 등급의 설정은 국가가 정하며 최종적인 합격·불합격의 결정

도 국가가 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종목의 경우 지정시험기관에 위탁되는 검정 업무의 범위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러나 기존 검정종목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능력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위탁한 부분의 일부를 노동후생대신이나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가 대신해 주고 있다.

<표 4> 일본 기능검정의 위탁 범위

후생노동대신	신규종목 지정시험기관	
	시험과목의 설정 등의 업무	시험의 실시 등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과목 및 그 범위와 그 항목의 작성</li> <li>○기능검정실시계획의 책정/실시고시</li> <li>○수험자격, 시험면제의 특례인정</li> <li>○시험실시요령의 인정</li> <li>○시험 합격기준의 결정</li> <li>○시험의 지도감독</li> <li>○기능검정의 합격여부 결정</li> <li>○합격증서의 작성(특급, 1급 및 단일등급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시험기관 기능검정위원의 위촉</li> <li>○시험과목, 범위 및 세목의 설정</li> <li>○수험자격 및 시험면제의 특례설정</li> <li>○시험문제의 작성</li> <li>○시험실시요령의 작성</li> <li>○시험의 수준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공시</li> <li>○수험안내의 작성</li> <li>○지정시험기관기능검정위원 및 보좌원의 위촉</li> <li>○수험신청서의 접수</li> <li>○수험자격 및 시험면제자격을 심사</li> <li>○수수료에 관한 업무</li> <li>○수험표의 교부</li> <li>○시험면제의 통지</li> <li>○시험의 실시</li> <li>○시험의 합격여부 판정</li> <li>○합격통지</li> <li>○수험자명부등의 작성</li> <li>○합격증서의 작성(다만 2급 이하), 교부 및 재교부</li> </ul>

자료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4. 위탁 기준과 심사절차

##### 가. 지정 기준

지정시험기관의 선정기준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7조에 규정된 능력요건<sup>1)</sup>과 “기능검정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능력평가과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각 항목에 따라 가부를 판단하며, 지정은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

1) 일본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7조의 지정시험기관 능력요건

- ① 대상기관은 먼저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또는 민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법인인 노동조합, 그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
- ② 다음으로 1) 직원, 설비, 시험업무의 실시방법 그 외 의 사항에 대한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업무의 적정 및 확실한 실시를 위해 적절한 것일 것, 2)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적정 및 확실한 실시에 필요한 경리적 및 기술적인 기초를 갖추고 있을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험업무의 실시계획 등의 요건

신청한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이하의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 ① 신청자가 그 단체 회원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실시하지 말 것.
- ② 기능검정 수지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정해 신청자가 행하는 다른 사업의 경리와 구분하여 경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③ 시험과목 및 그 범위 등 기능 평가를 행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규정할 것. 또 시험과목 및 그 범위의 세목이 기능검정 정기시험의 시험문제를 작성하는데 있어 타당할 것
- ④ 시험업무규정안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 시험수수료의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
  - 시험업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시험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외 시험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시험업무규정안, 시험사무매뉴얼안 또는 시험의 면제기준안에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될 것. 다만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중 하나만으로 시험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 각 단체간의 조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중 어느 한쪽만으로 시행할 것.
  - 일부 합격조치 및 일부합격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조치가 이루어질 것.
  - 원칙적으로 시험문제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시험문제의 정답이 공표될 것.
  - 합격·불합격 기준에 관해서는 미리 공표될 것.
  - 실기시험문제의 개요에 관해서는 미리 공표될 것.
- ⑥ 수험자격안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직업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업무의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함.
- ⑦ 시험의 면제기준안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시험, 또는 이들 시험과 동등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에 합격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규정된 직업훈련(사업주등이 행하는 것을 포함)을 수료한 후 정확하게 행해진 수료시험(기능조사 등)에 합격한 경우.

### 2) 단체요건

지정신청을 제출하는 자가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신청자가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또는 민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법인

인 노동조합,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

- ② 직원, 설비, 시험업무의 실시방법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업무의 실시를 위해 적절할 것.
- ③ 상기 ②의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 및 기술적인 기초를 갖추고 있을 것. 그 요건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신청자에게 인적 및 물적 능력이 있으며, 기능검정을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자산 및 능력이 있을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 신청자가 검정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명 이상의 규모로 적절하게 실시해 온 실적을 갖고 있을 것.
    - 신청자가 검정종목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실기시험을 포함한 시험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해온 실적을 갖고 있을 것.
  - 신청자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해 시험과목 및 그 범위, 시험의 실시계획, 수험자격, 시험면제의 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가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 직전 사업년도의 경리처리를 적절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부적절한 점이 없을 것. 또한 신청일이 사업년도 개시직후이어서 직전의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전의 사업년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직전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기능검정의 실시에 대해 정관 등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사업에 포함될 것. 또 공익법인 이외의 법인 등에 있어서는 기능검정의 실시에 대해 정관, 규약 등에 규정한 당해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것.
- ⑤ 신청자가 시험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갖고 있을 것.
- ⑥ 신청자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등을 포함한 직무규정이 규정되어 있을 것(시험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 3) 단체의 결격요건

신청자가 이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① 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규칙 제63조의 10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③ 신청자의 임원중에 법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일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

#### 4) 복수지정시험기관의 요건

복수 단체(기존의 지정시험기관을 포함)를 동일 종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지정하는 경우, 각 단체간에 선택작업(과목)의 중복이 없을 때에는 공통된 시험과목의 수준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하의 ①~③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복수 단체를 동일 종목의 동일 선택작업(과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에 덧붙여 이하의 ④~⑦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직원, 설비, 시험업무의 실시방법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시험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시험업무를 실시를 위해 적절하도록 각 단체간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
- ② 시험업무규정, 기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세목을 포함), 시험실시요령(합격·불합격기준을 포함), 수험자격 및 시험면제기준에 대해 선택작업(과목)을 제외한 부분이 동일할 것.
- ③ 학과시험문제 및 실기시험문제의 선택작업(과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각 단체간에 공통의 시험문제를 작성하기 위해 공동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에 작성한 시험문제를 사용할 것. 또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페이퍼테스트 및 요소시험은 선택작업(과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할 것.
- ④ 기능검정제도의 안정적,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복수의 단체가 수험대상자를 동일하게 하는 기능검정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기능검정업무에 관련된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수험자가 각 단체에 확보 가능하다고 예상될 것.
- ⑤ 특정 지역, 등급,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한하여 시험업무를 실시하는 단체는 각 단체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지정되지 않을 것.
- ⑥ 고도의 직업능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부터 상기 ④의 사항에 대해 관계 업계내에서 인식이 일치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 ⑤의 조정결과에 대해 관계 업계의 동의를 받고 있을 것
- ⑦ 시험업무규정, 기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세목을 포함), 시험실시요령(합격·불합격기준을 포함), 수험자격 및 시험면제기준이 동일할 것.
- ⑧ 복수의 단체를 같은 등급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페이퍼테스트 및 요소시험은 같은 문제를 이용하여 같은 일정으로 실시할 것.
- ⑨ 수험수수료는 각 단체간에 통일할 것.

#### 나. 지정 신청 및 심사 절차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는다. 종목과 단체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종목 추가에 대한 요구가 단체로부터 후생노동성에 들어오면 후생노동성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전국에서 한 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한다. 이것은 후에 다른 문제발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신청 전에 관련 단체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해서 신청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종목에 대해서는 일련의 시험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후생노동성이 직접 기존 관련단체에 요청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후생노동성과 특정종목의 민간단체는 평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위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에 근거한 신청은 후생노동성의 능력평가과와 해당 단체와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당 민간기관이 일련의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평가과의 사전 판단이 있는 후에 비로소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기능검정 위탁기관의 구체적인 지정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신청서의 양식은 임의이지만, 별도로 제공되는 양식은 있다.
- ②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부의 등본” 중 등기부의 등본에 관해서는 이력사항전부를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신청일 당해연도의 전년도 재산목록 및 임대차대조표(신청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설립시의 재산목록”에 관해서는 신청일이 사업년도개시 직후이어서 전년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년도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가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함)
- ④ “신청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시험업무 이외의 사업도 포함한 단체 전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로 한다. 또한 신청일이 사업년도개시 직후여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지정의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등으로 한다.
- ⑥ “시험업무의 실무방법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서류”란 다음의 서류로 한다.
  - 시험업무규정안
  - 기능검정시험사무 메뉴얼안
  - 시험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안
- ⑦ “그외 참고로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란 다음의 서류로 한다.
  - 시험과목 및 그 범위 및 그 세목안
  - 수험자격안
  - 시험의 면제기준안
  - 신청 종목과 관련된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실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평가시험의 개요 및 실적을 기술한 서류
  - 신청 종목에 대해 새로운 시험을 행하고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시험의 계획서(시행 시험문제 등을 포함) 또는 시행시험의 실시결과보고서
  - 신청자가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

- 는 서류(사무소의 임대계약서의 사본 등)
- 희망하는 수수료의 금액 및 산정근거
- 그 외 시험실시요령안, 기관의 팜플렛 등 참고 될 서류

## 2) 지정신청시기

지정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3) 심사절차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이 있을 때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7조제1항의 각호에 명기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도로 규정한 "기능검정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세목"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행한다. 심사 중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 규정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전문조사원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심사 결과, 신청자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거 지정을 한다. 심사의 결과, 신청자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다. 기능검정 위탁 취소

기능검정의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후생노동대신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능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지정을 받았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63조에서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또는 지정시험기관 기능검정위원이 시험업무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임원 또는 지정시험기관 기능검정위원의 해임을 포함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에 의해서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지원제도 및 사후관리

일본 기능검정의 종목별 검정응시료는 각 단체로부터 예상 응시자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정보를 제출받아 후생노동성에서 심사한 후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정수수료의 개정은 흑자와 적자의 상황을 보아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지만 수험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매년 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정시험기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들 기관이 제출한 시험업무에 필요한 실비의 산정을 고려하여 검정수수료의 한도액을 실기

시험에 대해서는 15,400엔에서 29,900엔으로, 학과시험에 대해서는 3,000엔에서 8,900엔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정종목 이외의 131종목의 검정수수료는 종전대로 일률적으로 실기시험 15,700엔, 학과시험 3,100엔이다. 이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정수수료가 높게 설정되게 된 이유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지원 없이 수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131종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경과적인 조치로서 “기능검정실시비”로서 예산 지원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정검정기관인 사단법인 조리기술기능센터(1,261만엔)와 사단법인 전국빌딩메이nten스협회(1,132만엔)에도 지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 기능시험을 실시해본 경험이 없는 단체에게 갑자기 수수료만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액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신규 지정시험기관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와 함께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을 실시했을 때는 지체 없이 수험자의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시험의 성적을 기재한 수험자 일람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그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정위원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 기능검정위원의 성명, 경력, 담당할 시험업무 및 선임의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경우,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에 의해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6. 위탁 결과 및 위탁기관의 어려운 점

### 가. 응시자수 및 합격률의 변화

지정시험기관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새롭게 검정종목이 된 4종목(파이낸셜 플래닝 종목, 금융 창구 서비스 종목, 레스토랑 서비스 종목, 유리용 필름 시공 종목)에 관해서는 신설 종목이기 때문에 응시자수와 합격률의 변동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 단, 조리종목과 빌딩 클리

1) 일본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48조 “후생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며, 또는 그 직원에게 지정시험기관의 사무소에 들어가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닝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시험기관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지정사업주 단체제도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이들 종목은 지정시험기관제도 도입 전후로 응시자수와 합격률에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 나. 자격검정기관의 조직과 수익상의 변화

지정시험기관인 모든 협회는 자격검정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과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에 위탁 전후로 하여 인력과 조직구성에서의 변화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협회는 위탁받기 전과 후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국가시험시행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협회 위상과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부 기관의 경우 관련 자회사에서 기능검정 시험문제집을 출판하여 간접적인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수익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재정사정연구회의 경우는 지정시험기관이 되기 이전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하였지만, 이후에는 학과와 실기를 분리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처리를 위한 아웃소싱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검정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웃소싱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는 후생노동성이 수험료 인상을 불허하였기 때문에 각각 1억엔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각각 1800엔이던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 수수료를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아 각각 3000엔으로 인상하였다.

#### 다. 위탁기관의 시행상 어려운 점

지정시험기관으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으로는 먼저, 지정 기준과 절차가 법률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전의 “기능심사”기관일 때에는 시험업무규정만으로도 충분하였는데, 지정시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업무규정, 수험자격규정, 면제규정, 검정위원규정 등을 갖추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검정결과 판정까지 최종적인 합격결정은 후생노동성이 하도록 되어 있어 결정과 도장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험자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검정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점도 어려움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시험일에 특정 지역에 태풍이 불어 시험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전에는 수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정시험기관이 된 후부터는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1) 해당기관 내부자료

2) 해당기관 내부자료

## 7. 정책적 시사

이상과 같이 일본의 “기능검정” 민간위탁제도인 지정시험기관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 지정시험기관 신청을 하기 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관련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여 신청 기관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 경우 후생노동성은 당해 업계내의 일원화된 기관의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해당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선정 후의 업계내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후생노동성은 원천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일본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 의한 수탁 기관의 일방적 선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차원의 기관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관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일본에서 기능검정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개혁과정에서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기능검정 종목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목도 제한 없이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위탁을 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국가자격 검정업무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가 아니며, 현재 자격의 현장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임·위탁 추진도 정부관련 조직의 슬림화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위탁의 우선순위도 신규종목의 경우에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종목의 경우에는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 종목을 모든 분야에서 개방할 경우 무분별한 신청으로 위탁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종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일본 기능검정의 위탁시 기존에 자격검정을 시행한 경험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자격검정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능심사” 종목과 같이 기존에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도 “기능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적자를 검정 수수료의 인상을 통해 상당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능검정”의 민간 위탁을 민간기관의 참여 개방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자격 검정을 위탁 받음으로써 해당 민간기관이 대외적인 위상의 제고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수임·수탁 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정운영에 대한 기술적(직무분석, 문제출제 및 검토, 시험감독, 취득자관리, 문제은행 관리 등),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일본의 경우 “기능검정”의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수입·수탁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새롭게 개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함께 전체 검정 절차상 해당 기관에 위탁된 내용 이외에 여전히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부분이 많아 탄력적인 검정시행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즉, 시험과목의 설정과 시험 실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정기관의 합격 여부 판정 이후에도 최종적인 합격결정은 정부가 하고, 특급과 1급의 경우에는 합격증서도 정부가 직접 발급하는 등 원활한 검정 시행에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민간에 위탁된 국가자격 검정일지라도 최종적인 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응시자의 편이성이나 검정기관의 효율적인 검정시행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검정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과 검정과목 등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등 자격종목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검정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검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현재 2개 기관에 불과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입·수탁 기관이 늘어날수록 이들 모든 기관의 세세한 절차를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임·위탁 사항과 제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수탁 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이 경우 정부는 자체 규정의 적절성과 준수 여부만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면 정부가 검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검정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 론

민간기관의 자격검정 관리운영 능력은 지난 30여 년간 정부주도의 독점적인 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1~2년의 단 기간 내에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제도의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위임·위탁 대상 기관의 검정 관리·운영 능력, 위임·위탁에 대한 관련 집단간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능검정 위탁 사례조사 결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위탁 대상 국가기술자격종목은 기관의 전국적인 검정시행이 수월하면서, 검정응시료의 자율화에 따른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과 국가자격검정을 통한 검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의 위임·위탁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전문서비스 분야 이외 이를 만족하는 종목으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과 같은 일반사무 및 정보처리분야의 자격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기존 공인민간자격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편 관련 전문단체가 많아 위임·위탁 시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효율적인 위임·위탁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위임·위탁 대상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장 우선시 한다. 즉,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만이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출제기준에 반영시켜 자격의 현장성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성이 있어야 해당 분야의 타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자격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격검정의 질 관리와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 고려하여 자격검정의 위임·위탁은 자격종목 분야의 1개 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은 일본의 기능검정과 달리 노동부 이외의 해당 종목별 주무부처가 있다. 그러므로 위임·위탁 종목의 선정 및 제도 시행시 주무부처와 노동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위임·위탁 기관 선정시 기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주무부처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존의 위탁 검정기관의 기능 및 지위를 유지시킨다. 일본의 기능검정 위탁 사례의 경우도 중앙직업능력협회에서 시행하는 직종에 대한 민간위탁 사례는 없었다.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위탁 희망 기관이 없거나,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 이후 취소 기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탁 기관의 책무성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다. 즉, 수탁 기관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 검정방법, 검정내용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자격의 현장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율권 보장 등으로 인한 자격의 질 적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해당분야의 질적·양적 인력수급의 예측이 가능하고, 자격의 현장성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확대 시행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위탁제도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않은 분야의 경우의 위임·위탁 기관은 해당 업계가 합의를 통해 스스로 대표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을 일원화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참 고 문 헌

- 김덕기·김상진(2003). 국가기술자격 내실화 방안 IV,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영훈 외(1997). 자격제도의 종합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김덕기(200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김덕기·김상호(2003).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김주섭·박성재·류장수(2002).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노동연구원.
- 이영현·이동임·손유미·최영호·김철희(2003).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실태.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정진화·최영섭(2003). 기업주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기구 설립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조정윤·김덕기(2001). 국가기술자격 검정위탁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日本 職業能力開發促進法  
\_\_\_\_ 職業能力開發促進施行令  
\_\_\_\_ 職業能力開發促進法施行規則
- 中央職業能力開發協議會(1999). 職業能力開發における 技能檢定